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357호 2023. 1. 10.(화)

###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61호(공유재산 사용료 등 지방세체납에 따른 재산(예금)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65호(조례의 제정 및 폐기 청구를 위한 2023년도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표) .....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66호(시간대별 주차 단속 완화 행정예고) ..... 3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61호

## 공유재산 사용료 등 지방세체납에 따른 재산(예금)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사용료등 지방세체납에 따른 재산(예금)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01.10.~2023.01.25.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부과연도	부과대상	납부자/납부자번호/대표자	주소	납기일	압류총금액	반송일	반송사유
2022	청능대로*** 탑** 빌딩 일부(3**m <sup>2</sup> )	이**사회***조합 (120151-*****) 대표 *재*	인천광역시 청능대로 17*, ***동 ***호	2022.11.07	3,480,940	2023.1.1.	수취인 불명

### 5.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에 따른 금융(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기타 문의사항 :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325-749-8481)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2023년도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2023년도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 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3. 1.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 수 ◆

(단위: 명)

청 구 권 자				연서 주민 수 <sup>4)</sup>	비 고 (선거권 없는 자)
연령	주민총수 <sup>1)</sup>	내국인 <sup>2)</sup>	외국인 <sup>3)</sup>		
18세 이상	316,502	315,753	749	4,522	202

1) 주민총수: 내국인수 + 외국인수

2) 내국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3) 외국인: 18세 이상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연수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연서 주민 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 시간대별 주차 단속 완화 행정예고

시간대별로 주차 단속 완화를 확대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1. 행정예고 목적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가족 단위 야외활동 지원을 위해 시간대별로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자 함

#### 2. 행정예고 기간 : 2023. 1. 10 ~ 1. 31.(22일간)

#### 3. 시 행 일 : 2023. 2. 1. (수)

#### 4. 공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www.yeonsu.go.kr](http://www.yeonsu.go.kr))

※ 연수구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 주요 변경사항

○ 단속 유예 시간 : 주말 및 공휴일 9:00 ~ 12:00

○ 주말 및 공휴일 가족단위 이용 활성화 시간대 일렬주차에 한해 계도 위주 단속으로 탄력적인 주정차단속 시행

- 절대주정차금지구역(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통흐름 방해 및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은 정상단속 실시

## 6. 의견 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수구 차량민원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타 사항 등)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등
  -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 우편 :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 032)749-8790
    - 팩스 : 032)749-8789
-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